

1. 개정 이유

현행법상 미비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전자교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제도 개선(안 제44조제5항 개정 등)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적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보안심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보안심사 세부내용에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48조제1항 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 - 95호)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과처분의 차수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처분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항하는 불개항장”을 “기항(寄港)하는 불개항장(不開港場)”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책임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평가를 포함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승선하려는 자”를 “승선(乘船)하려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와 승선하는 자가”를 “사람과 승선하는 사람이”로, “수하물”을 “수화물(手貨物)”로 한다.

제7조제1호다목 중 “공기조화장치”를 “공기조화장치(환기 및 냉난방 조정장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를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로,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을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으로, “병기하여야”를 “병기(併記)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갱신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갱신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만당국에 의하여”를 “항만당국으로부터”로, “항만으로부터”를 “항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하여”를 “지적해”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초보안심사: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최초보안심사: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시선박보안심사: 선박보안평”을 “임시선박보안심사: 선박보안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가 없거”를 “사람이 없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에 대하여는”을 “선박은”으로,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훼손된”을 “해당증서가 훼손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를 “재교부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

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자증서의 교부)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시운전”을 “시험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도록 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를 “영어·프랑스 또는 스페인어가”로,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을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를 “않도록 관리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훼손한”을 “해당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나목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

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실제경보”를 각각 “실제 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중 “아니하도록 하고”를 “않도록 하고”로, “아니하도록 할”을 “않도록 할”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船首) 방향]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여객선 : 상공”을 “여객선: 상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선박 : 다음”을 “선박: 다음”으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만재흘수선”을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횡격벽”을 “횡격벽(橫隔壁)”으로 한다.

(1) 선미(船尾)

제19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였거”를 “않았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아니하였”을 각각 “않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통보하여 온”을 “통보해 온”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장에 대하여”를 “선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출항정지 : 제19조제1항제1호”를 “출항정지: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동제한 : 제19조제1항제4호”를 “이동제한: 제1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정요구 : 제19조제1항제1호”를 “시정요구: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추방 : 제19조제1항제2호”를 “추방: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선박점검 : 제19조제1항제2호”를 “선박점검: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입항거부 : 제19조제1항제5호”를 “입항거부: 제19조제1항제5호”로,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를 “국제항해선박이”로 한다.

제22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을”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부하여”를 “보내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변경승인하였”을 “변경승인했”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최초보안심사 : 항만시설 운영개시일”을 “최초보안심사 : 항만시설 운영 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갱신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갱신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간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을 “중간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발생하였”을 “발생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를 “않도록 관리해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위탁수하물”을 “위탁수화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위탁수하물”을 “위탁수화물”로 한다.

제37조의3제1호 중 “(原形)검색장비”를 “(原形)검색장비(whole body sc

anner)”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속탐지장비(문형)”을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의6제1항제1호 중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제작되었는지”로, “있는지 여부 등을”을 “있는지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으로부터”를 “선박에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물장치장”을 “화물 장치장(藏置場)”으로, “사일로 및 저유시설”을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 및 저유(貯油)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관제시설”을 “항만관제(管制)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기조화장치실”을 “공기조화 장치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 장치실)”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선박이이용하는”을 “선박이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를 “사람을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를 “항만시설소유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49조 중 “매반기”를 “매 반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병행하여”를 “병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53조 중 “매반기”를 “매 반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지계산서”를 “수입·지출계산서”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에 4.의 보안심사 세부내용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부보안심사자의 적격여부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내부보안심사자

성 명	부 서	직 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비고

※ 내부보안심사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첨부가 가능합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위 항만시설의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 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 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 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항만시설)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u>기항하 는 불개항장</u> 의 선박계류시설	3. ----- ----- ----- <u>기항 (寄港)하는 불개항장(不開港 場)</u> -----
제3조(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 보 등) ① (생략)	제3조(보안등급 설정·조정의 통 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 · 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 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 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	② ----- ----- ----- ----- ----- -----

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나. (생략)

8.·9. (생략)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 해야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 책
임 규정

가.·나. (현행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생략)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 9. (생략)

③ (생략)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

---- 작성해야 -----.

② -----
----- 평가
를 포함해야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승선(乘船)하
려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4. ----- 사
람과 승선하는 사람이 -----
----- 수화물(手貨物)-----
--

5.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

-----.

1. -----

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
한구역의 관리

가.·나. (생략)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 자. (생략)

2. ~ 10. (생략)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
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
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
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
로 병기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공기조화장치(환
기 및 냉난방 조정장치)-----

라. ~ 자.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승인 절차) ① -----

----- 제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작성해야한다. -----
-----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 영어·프랑스
어 또는 스페인어 중 -----
-- 병기(併記)해야 -----

③ (생략)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

-----.

1. 갱신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

2.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항만당국으로부터 -----

----- 항만에서 -----

2. -----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u>지적하</u> <u>여</u> 통보한 때	----- <u>지적해</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 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 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갱 신·중간·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② ----- ----- ----- ----- ----- ----- ----- ----- ----- ----- ----- <u>제출해야</u> -----.
1. <u>최초보안심사</u> : 임시국제선박 <u>보안증서</u> 사본	1. <u>최초보안심사</u> : 임시국제선박 <u>보안증서</u> --
2. 갱신보안심사 또는 <u>중간보안</u> <u>심사</u>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 <u>중간보안</u> <u>심사</u> : 국제선박보안증서 ---
3. <u>임시선박보안심사</u> : 선박보안 <u>평가</u>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 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3. <u>임시선박보안심사</u> : 선박보안 <u>평</u> -----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 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 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	③ ----- ----- -----

심사의 사유·방법·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

----- 않을 -----.

④ -----

----- 않을 -----.

⑤ -----

----- 사람이 없거-----

----- 않을 -----

수 있다.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 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가. (생략)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

-----.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선박은 -----

----- 표기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증서가 훼손된 -----

----- 재교부를 신청해야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생략)

<신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13조

-----.

----- 제출해야
-----.

2. -----

가. ----- 변경해야 -----

-----.

제출해야 -----.

나.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자증서의 교부)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

제출해야

--.

②

인정하면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
지 선박의 항해 허용) -----

-----.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u>시운전</u>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u>기록하도록 하여야</u> 한다. 1. ~ 7. (생략)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u>작성하여야</u> 한다.	1. ----- ----- ----- ----- ----- ----- ----- <u>시험운전</u>----- ----- 2. ----- <u>않</u> <u>는</u> ----- ----- 3. ----- <u>않</u> <u>는</u> ----- ----- --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 ----- ----- ----- <u>기록해야</u> -----. 1. ~ 7. (현행과 같음) ② ----- ----- ----- <u>작성해야</u> -----.
--	---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
다.

③ (생략)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
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
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
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
청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
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
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영어·프랑스
또는 스페인어가 -----
영어·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않도록 관리해야 -----

-----.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
청 등) ① -----

제출해야 -----.

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5. (생 략)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
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
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
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 (생 략)

나.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선
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
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
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야

--- 않는 -----
----- 해야 -----.

2. ~ 5.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선박이력
기록부가 훼손된 -----

----- 제출해야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제출해야 --
-----.

2. (생략)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해당 선박의 국적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국제항해선박의 과거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

2.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실제 경보-----

3. 실제 경보-----

당 보안정보신호를 국가보안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
정보신호전파시스템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
보안정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
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요건

가.·나. (생략)

다. 다른 선박에 보안정보신
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
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
까지 선박보안정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정보장치에서 송
신되는 보안정보신호는 다
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을 것

(1) ~ (5) (생략)

(6) 국제항해선박의 침
로(針路: 선수 방향)

②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않도록 하고

않도록 할 ----

라. -----

----- 않을 ---

마. -----

(1) ~ (5) (현행과 같
음)

(6) 국제항해선박의 침
로[針路: 선수(船首)
방향]

(7)·(8) (생략)

2. 설치장소

가. 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
소에 설치할 것

나. (생략)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
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
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
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
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
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
우

가. 여객선 : 상공에서 볼 수

(7)·(8) (현행과 같음)

2. -----

가. -----
----- 않는 -----

나. (현행과 같음)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

-----.

1. -----

----- 않도록 -----

--

2. (현행과 같음)

② -----

----- 표시
해야 -----.

1. -----
--

가. 여객선: 상공-----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 : 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2) 선체 중앙부의 좌
현 및 우현의 만재
흘수선 상부

(3) · (4) (생략)

2. 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
우

가.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
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
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 (생략)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
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

나. ----- 선박: 다음 -

-

(1)

(2) -----
----- 만재
흘수선(滿載吃水線)

(3) · (4) (현행과 같음)

2. -----
--

가. -----

---- 횡격벽(橫隔壁) ---

나. (현행과 같음)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

-----.

1. -----

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 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 (생략)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 · 7.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

----- 않은 -----

2. -----

----- 않
았거-----

3. -----
않았-----

4. (현행과 같음)

5. -----

----- 않았-----

6. · 7. (현행과 같음)

② -----

----- 해제해야 -----

야 한다.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
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
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
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
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
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
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
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
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
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
다.

④ (생략)

-----.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① -----

----- 통보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해 온 -----

----- 통보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1. 출항정지 : 제19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 :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 : 제19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

----- 선장에 게 -----
-----.

1. 출항정지: 제19조제1항제1호

2. 이동제한: 제19조제1항제4호

3. 시정요구: 제19조제1항제1호

4. 추방: 제19조제1항제2호 ---

보내는 명령	-----
5. <u>선박점검</u>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 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는 명령	5. <u>선박점검</u> : 제19조제1항제2호 ----- ----- ----- -----
6. <u>입항거부</u> :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u>국제항해선 박에 대하여</u> 관할 항만에 입 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6. <u>입항거부</u> : 제19조제1항제5호 ----- ----- <u>국제항해선 박이</u> ----- -----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 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 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 스템으로 <u>통보하여야</u> 한다.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 ----- ----- ----- ----- <u>통보해야</u> -----.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 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 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 ----- ----- ----- ----- ----- ----- <u>제출해야</u>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생 략)

② (생 략)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 점검)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 확인해야 -----

않는 -----
첨부해야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려
는 -----

-----.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생략) 2.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u>시행에 관하여</u> 협의·조정하는 일 3. ~ 11. (생략)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u>송부하여</u>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u>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1. (현행과 같음) 2. ----- ----- ----- ----- <u>시행</u>을 ----- 3.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보내어</u> ----- ----- <u>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 ----- ----- ----- ----- -----
--	--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장비를 항만시설 또는 선박으로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 14.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

-----.

1. -----
-- 않은 -----

2.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

----- 제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 변경승인했 -----

----- 관리해
야 -----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 최초보안심사 : 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 갱신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중간보안심사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폐쇄회로 텔

----- 보고해야 -----
--.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

-----.

1. 최초보안심사: 항만시설 운영
시작일 -----

2. 갱신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
확인서-----

--

3. 중간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

② -----

----- 폐쇄회로 텔

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시험 운영 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 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생략)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레비전 -----

-----.

③ -----

-----.

1. ----- 발생했-----

2. -----

----- 대한 -----

3. (현행과 같음)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

----- 제출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

----- 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도록 관리해야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

----- 사람의 -----

----- 위탁수하물 -----

----- 해
안 -----.

② -----

----- 사람
의 -----

해야 -----.

③ -----

----- 사람의 -----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u>하여야</u> 한다. 1. ~ 5. (생략)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 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u>자가</u> 휴 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u>아니한다</u> <u>고</u> 인정하는 경우에는 <u>위탁수화</u> 물로 신계 할 수 있다.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 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 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2.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 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 장비를 <u>말한다</u>), 폭발물 탐지 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 <u>해야</u>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 <u>사람이</u> - ----- ----- <u>않는다고</u> ----- <u>위탁수화</u> 물-----.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 ----- -----. 1. ----- ----- ------(原形)검색장비 (whole body scanner) ----- -- 2. ----- --- <u>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u> ----- ---- <u>말한다]</u>----- ----- -----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	--

점검) ①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보안검색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점검

2.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의2(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점검) ① -----

-----.

1. -----
----- 제작되었는지 -----

----- 있는지를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

----- 확인해
야 -----.

--- 않는 -----
----- 해야 -----.

③ -----

----- 교
부해야 -----.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련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 3. (생략)

③ (생략)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해야 ----.

1. ~ 8. (현행과 같음)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 -----
----- 보
고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제공해야

-----.

1. ----- 선박에
선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

-----.

1. -----

구조물), <u>돌핀</u> , 선착장 및 램프 (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 류지역	----- <u>돌핀(계선말뚝)</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창고, <u>화물장치장</u> ,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u>사일로</u> 및 <u>저유시설</u>	3. --- <u>화물 장치장(藏置場)</u> --- ----- <u>사일로[시</u> <u>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u> <u>貨物)의 저장시설] 및 저유(貯</u> <u>油)시설</u>
4.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u>항만관</u> <u>제시설</u>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 치된 지역	4. ----- ----- <u>항만관</u> <u>제(管制)시설</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7.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 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u>공기</u> <u>조화장치실</u> 및 인화성·폭발 성 화물 저장지역	7. ----- ----- ----- <u>공기</u> <u>조화 장치실(환기 및 냉·난</u> <u>방 조정 장치실)</u> ----- -----
8. 9. (생략)	8.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 ----- ----- -----

다.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3. (생략)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

1. -----

-- 선박이 이용하는 -----

2. 3. (현행과 같음)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절차 등) ① -----

----- 포함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보관해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 -----
----- 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해 -----

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야 ---. -----

----- 그렇지 않다.

⑤ 항만시설소유자-----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제출해야 -----

----- 확인해야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보안심사업무에 종사하는 <u>자</u>의 책임·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5. (생략) ③ (생략)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u>공고하여야</u> 한다.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u>매반기</u>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u>포함하</u>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u>사</u> <u>람의</u> ----- -----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고해야</u> ----.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 ----- ----- <u>매 반기</u> ----- ----- ----- -- <u>보고해야</u> ----.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 ----- ----- <u>포함해</u>
---	--

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무선·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⑤ 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

야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병행 -----.

----- 통
보해야 ----.

④ -----

---- 보고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⑤ -----

----- 해야
-----.

-- 않은 -----

원도 함께 보안훈련·교육을 하
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
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보안교육·훈련을 6시간 이
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
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 해
야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수립
·시행해야 ----. -----

-----.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

----- 제출해야 -----.

----- 확인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
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
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
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
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
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
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
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
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
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

----- 매 반

기 -----

보고해야 ----.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지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
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

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1.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생략)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수입·지출
계산서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